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432

발의연월일: 2025. 5. 9.

발 의 자:윤준병·허성무·김태선

이원택 · 김한규 · 박희승

정성호 · 서영교 · 김태년

조계원 · 문진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·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, 산림재난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력과 장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. 특히, 산불진화단, 산불전문예방진화대,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같은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가 부재하고 노후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령 및 내구연한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산불진화단,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위험근 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산림항공기 등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산림항공 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산불 등의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,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20751호산림재난방지법 제37조제3항 및 제55조의2 신설).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, "운영"을 "운영 및 보수"로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진화단,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 난특수진화대의 보수와 위험근무수당 및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5조의2(산림항공기 기령 등) ① 산림청장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와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기령 및 내구연한(이하 이 조에서 "기령 및 내구연한"이라 한다)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.
 -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령 및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산림항 공기를 운영하거나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. 다만, 「항공안전법」 제23조제5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 효기간까지는 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을 운영 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

- ③ 정부는 기령 및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산림항공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산림청장은 보유 중인 산림항공기의 기령 및 내구연한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7조(산불진화단 등 구성・운 제37조(산불진화단 등 구성・운 영) ① · ② (생 략) 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 불진화단,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보수와 위험근무수당 및 그 밖의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불진화단, 산불예방진화대 및 른 산불진화단,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 ·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•운영 및 보수 등 필요한 사 령으로 정한다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 설> 제55조의2(산림항공기 기령 등) ① 산림청장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와 산림항공기 의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기령 및 내구연한(이하 이 조에서 "기령 및 내구연한"이라 한다)

수 있다.

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

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

기령 및 내구연한을 초과하여

산림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산림 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항공안전법」 제23조제5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 는 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 기의 장치 및 부품을 운영하거 나 사용할 수 있다.

- ③ 정부는 기령 및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산림항 공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산림청장은 보유 중인 산림 항공기의 기령 및 내구연한 현 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 개하여야 한다.